

##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 제2차 임시이사회의록

- 일 시: 2014년 11월 18일(화) 오전7시 30분  
□ 장 소: 인천다비다원 법인사무실  
□ 참석이사: 대표이사 윤 , 이사 이 , 이사 신 , 이사 유  
이사 안 , 이사 홍 (총7명/출석6명)

### □ 안 건

- 제1호 의안: 법인 및 시설 추경예산(안) 심의
- 제2호 논의: 법인 내 현안과제 논의

○윤 대표이사: 성원보고로 이사 7인 중 6인 참석함을 확인 후 정관 제28조 1항에 의거하여 개회를 선언하다.(의사봉3타)

○윤 대표이사: 먼저 제2차 임시이사회개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, 우리 법인 및 시설들의 추경예산안 심의와 법인 내 발생된 현안에 대하여 이사들의 자혜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하다.

### □ 안건상정

○윤 대표이사: 제1호 의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, 법인정관 제26조 제5항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법인, 밝은마음, 주안해피타운, 주안노인복지센터의 2014년도 각 시설의 제1차 추경예산(안) 심의 건을 상정하고, 제안설명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다. (의사봉3타)  
- 준비된 회의자료(3쪽-37쪽)에 의하여 법인의 2014년도 당초 예산총액 54,400천원에서 법인 후원회 후원금 수입과 점검 조치에 따른 세입증액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공사에 따른 주변울타리 추가시설비 등 세출의 조정하는 32,702천원 증액하는 추경예산(안), 밝은마음의 2014년도 당초 예산총액 2,457,000천원에서 이용인 및 종사자 적용규정변경과 안전 방충망 설치공사 기능보강사업, 차입금 등으로 세입·세출액이 50,500천원 증액하는 추경예산(안), 주안해피타운 2014년도 당초 예산총액 1,233,672천원에서 본인부담금 오류정정 세입감액, 수가인상 및 등외자운영비 세입증액과 세출에서는 제수당, 종사자급식비 감액하고, 기타 운영비은 증액하여 세입·세출액이 36,672천원 감액하는 추경예산(안), 주안

노인복지센터 2014년도 당초 예산총액 255,649천원에서 요양수가인상, 단기보호입소비용수입,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등 세입증액과 단기보호운영으로 인한 사무비, 부채상환금 등을 60,744천원 증액하는 추경예산(안)을 설명하다.

○윤 대표이사: 제1호 의안의 제안 설명에 대한 의견을 묻다.

○홍 이 사: 밝은마음의 차입금과 주안해피타운의 본인부담금 감액에 대하여 묻다.

○윤 대표이사: 밝은마음과 주안해피타운 시설장에게 질문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게 하다.

○신 이 사: 자세한 답변에 이해되었으나, 정확하고 명확한 업무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다.

○윤 대표이사: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관리자 등 담당별 교육을 통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할 것임을 답하며, 향후에는 책임도 물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조치도 하겠다고 표명하다.

○신 이 사: 제1호 의안은 2014년도 법인과 각 시설의 예산집행과정과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경예산(안)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하다.

○안 이 사: 업무처리능력향상에 대한 의지를 믿고, 신의 이사의 동의에 재정하다.

○유 이 사: 삼청하다.

○윤 대표이사: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물고, 이견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제1호 의안인 2014년도 법인, 밝은마음, 주안해피타운 및 주안노인 복지센터의 제1차 추경예산(안)은 법인 정관 제28조1항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(의사봉3타)

○윤 대표이사: 이어서 법인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를 법인 정관 제26조 8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주문하고, 첨부된 회의자료 연수구 사회복지과-50302(2014.11.5) 공부문서를 참조하여 “행정처분 통보”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다.

- 홍      | 이사: 보건복지부 법적용 질의·답변에 의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 처분 통보내용에 대한 시설장으로서의 심경과 의견을 묻다.
- 윤      대표이사: 통보 받은 후 처분의 법적근거와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,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, 해법을 찾을 수 없음을 토로하고, 이사들의 혜안을 다시 요청하다.
- 신      이사: 통보된 행정처분 내용에 이의를 제기 할 것인지, 이행 할 것인지에 대한 시설장의 의지가 중요하며, 향후 법인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 해야함을 강조하다.
- 안      이사: 행정심판, 소송 절차가 쉽지 않을 이야기 하고, 현재 처분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와 처분의 이유가 사실이 아님을 확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다.
- 윤      대표이사: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법인과 시설을 위하여 처분 통보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하다.
- 홍      이사: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전화위복의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, 후속절차로 처분이행 완료일인 2014년 11월 30일까지는 시설장직을 유지하되, 조속한 기일 내에 사회복지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장 공모절차를 거쳐 채용도록 하며, 채용 시까지 직무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도록 의견을 제시하다.
- 안      이사: 상기 의견주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고, 절차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련법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동의하다.
- 신      이사: 안재현이사의 동의에 재정하다.
- 이      이사: 삼청하다.
- 윤      대표이사: 다른 의견 없는지 물고,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, 시설현 안과제는 사회복지관련 법령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동의 재정내용과 같이 처리하기로 의결하다. (의사봉3타)

- 윤 대표이사: 기타토의를 주문하다.
- 이 이사: 기타토의 의견이 없다는 발언과 폐회동의하다.
- 홍 이사: 재정하다.
- 유 이사: 삼청하다.
- 윤 대표이사: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고견 주심을 감사하고, 법인 내 현안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. 금번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겠다고 폐회를 선포하다. (의사봉3타)

위와 같이 논의·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날인하다.

2014. 11. 18

###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

대표이사 윤

이 사 이

이 사 이

이 사 이

이 사 이

이 사 이